광명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 규정

제정 1990. 8.10 훈령 제 86호 개정 1998. 10. 2 훈령 제179호(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1999. 9. 20 훈령 제1/9호(사지법규입법예고여 2004. 9. 7 훈령 제240호 2005. 4. 21 2008. 6. 16 훈령 제248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훈령 제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훈령 제29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2010. 12. 15 훈령 제31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2. 8.30 훈령 제328호(훈령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정) 일부개정 2013. 5. 22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329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훈령 제374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9.29 일부개정 2018. 7. 31 훈령 제399호(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 민방공경보단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민방공경보단말"(이하 "경보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민방공경보시설관리 및 경보전달을 위하여 설치된 민방공 경보 분배, 중계, 수신단말을 말한다.
- 2. "민방공경보 분배단말"(이하 "분배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신된 정보를 자체 및 산하 민방공경보 중계, 수신단말에 전달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 3. "민방공경보 중계단말"(이하 "중계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신된 경보를 자체 및 산하 민방공경보 수신단말에 전달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 4. "민방공경보 수신단말"(이하 "수신단말"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시된 경보에 의해 사이렌을 취명하는 경보단말을 말한다.

제3조(설치) 경보단말의 설치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관리요원) 중계 및 수신단말에는 관한 동의 민방위담당공무원을 시설관리요원으로 지정·유영한다.

제2장 임무

광명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 규정

- 제5조(임무) 중계 및 수신단말 시설관리요원(이하 "시설관리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경보시설의 보안점검 및 출입자 통제
 - 2.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 3. 그 밖에 경보망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휘 및 보고

- 제6조(지휘체계) ① 안전총괄과장은 경보단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② 민방위팀장은 경보단말의 운영에 관하여 안전총괄과장을 보좌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③ 안전총괄과장은 경보전달 임무를 총괄하여 시설관리요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2018. 7. 31〉
 - ④ 시설관리요원은 안전총괄과장의 명을 받아 경보시설을 관리하며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은 도 민방공경보통제소(이하 "도통제소"라 한다)의 지휘를 받아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제7조(보고체계) 시설관리요원은 시설관리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근무요원 및 민방위팀장에게 매주 목요일 17:00까지 보고하고 민방위팀장은 이를 종합하여 당일 18:00까지 안전총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제4장 경보전달체계

제8조(선조치 후보고) 안전총괄과장은 시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도통제소에 경보발령을 요청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즉시 도 재난대응과장을 경유 도지사 및 안전행정부장관

(추 1)

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08. 6. 16, 2010. 12. 15, 2012. 8. 30, 2013. 5. 22, 2013. 8. 1〉

- 제9조(주의보발령시 조치) 안전총괄과장은 도통제소 및 시장, 지역군부대장으로부터 주의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1. 시설관리요원의 정위치배치 및 시설점검
 - 2. 도통제소 및 시 상황실, 지역군부대로부터의 상황파악
 - 3. 도통제소에 경보발령 준비요청
 - 4. 사용 가능한 새마을앰프 및 민방위차량 가두방송 준비
 -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제10조(경보발령시 조치) ① 안전총괄과장은 도통제소로부터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1. 도통제소에 경보발령 확인
 - 2. 도통제소로부터 자동취명이 불가능 통보시 시설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자체 수동취명토록 조치
 - ② 안전총괄과장은 시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1. 시 상황실 및 지역군부대에 경보발령 확인
 - 2. 도통제소에 경보방송 및 사이렌 취명 요청
 - 3. 가용가능한 새마을 앰프 및 민방위 차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통제상황 민 방공경보방송문안(별표 2)가두방송 실시
 - 4. 시설관리요원은 경보전달 후 도통제소에 보고

제5장 경보단말운영 및 복무

제11조(운영) 경보단말은 연중 24:00시간 계속 운영한다.

- 제12조(비상소집 및 근무)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설관리요원을 비상소집한 후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2018. 7. 31〉
 - 1. 도통제소 및 도지사, 지역군부대장의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이 있을 때
 - 2.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 3. 도지사 및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 4. 기타 안전총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만, 이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안관리) ① 안전총괄과장은 시설별 통신보안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시설관리요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통신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② 안전총괄과장은 자체경보시설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보안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점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③ 경보시설출입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제한구역표시를 매출입구마다 백 색바탕에 청색글씨로 표시하고 창문은 이중문으로 설치하며 주변지역은 외부 침입방지를 위해 건물구조와 높이에 따라 1.5m이상 높이로 이중철조망을 설 치하여야 한다.
 - ④ 경보시설에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출입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장비점검 및 운영관리

제14조(물품관리) ① 안전총괄과장은 경보단말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출납과 시설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추 1)

-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② 경보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6〉
- ③ 안전총괄과장은 경보시설장비에 대해 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제15조(장비정기점검) ① 시설관리요원은 자체경보시설에 대해서 매주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 1. 경보시설장비의 관리상의 문제점
 - 2. 경보시설장비의 정비상태
 - 3. 경보업무에 대한 보안점검
 - 4. 기타 경보전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의한 정기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기록유지하고 그 주요사항은 도통제소 및 근무요원과 안전총괄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제16조(장비고장시 조치) ① 안전총괄과장은 경보시설장비의 고장시에 시설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즉시 예비품으로 수리,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② 발견된 고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4:00시간이내에 복구하여야 하며 자체수리 불가시에는 도 통제소에 의뢰하여 보수조치하여야 한다.
 - ③ 안전총괄과장은 경보시설장비 고장발생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 통제소장 및 근무요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 제17조(기록유지)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 한다. 〈개정 2008. 6. 16〉
 - 1. 출입자통제기록부(별지 제1호 서식)
 - 2. 경보사이렌 주간 점검일지(별지 제2호 서식)

3. 민방공경보사이렌 오취명발생시 조치사항(별표 3)

제18조(관계기관의 협조) 안전총괄과장은 경보단말의 운영, 관리와 민방공경보전달 임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도 통제소, 지방방송사, 지역군부대, 기타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2, 99. 9. 20, 2004. 9. 7, 2005. 4. 21, 2010. 12. 15, 2012. 8. 30, 2013. 8. 1〉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0. 2 훈령 제1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9. 9. 20 훈령 제1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9. 7 훈령 제2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 21 훈령 제2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훈령 제29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② 광명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제1항과 제2항까지, 제12조와 같은 조 제4호, 제13조제1항과 제2항, 제14조제1항과 제3항, 제15조제2항, 제16

조제1항과 제3항, 제18조, 별표 3 하단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하수과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결재 란 중 "민방위담당"을 "민방위팀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③ 까지 생략

부칙〈2012. 8. 30 훈령 제31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광명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과리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재난하수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2013. 5. 22 훈령 제328호, 훈령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1 훈령 제329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16. 9. 29 훈령 제374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 ⑤ 광명시 민방공 경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소하1동 주민센터"를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2018. 7. 31 훈령 제399호, 훈령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6. 9. 29〉

경보단말 설치 지역

연 번	단 말 명 칭	설 치 지 역	설 치 연 도
1	광명시 수신 단말	1.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2000. 11. 24
2		2. 광명시 광명로 181 광명남초등학교	2000. 11. 24
3		3. 광명시 너울2길 20 광명1동 주민센터	2007. 11. 20
4		4. 광명시 가림1길 50 하안1동 주민센터	2001. 06. 01
5		5. 광명시 소하로 2-1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	1999. 10. 18
6		6. 광명시 설월길 16 소하2동 주민센터	2000. 11. 24
7		7. 광명시 아방리1길 2 온신초등학교	1999. 10. 18

[별표 2]	
	지역통제상황민방공경보방송문(안)

광 명 시

1. 지역통제상황 주간 민방공경보방송문(안)

광 명 시

경 계 경 보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음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적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국 민 행 동 요 령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라 며, 경찰관서에서는 주민의 안전보호와 교통통제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은 대원을 지휘하며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는 미리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시기 전에 화재의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고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공 습 경 보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음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국 민 행 동 요 령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하실 때에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광명시 민방위 상황 실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추 1)

재 차 경 계 경 보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음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광명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광명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바꾸어 발령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피소에서 나와 사태수습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경 보 해 제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했던 실제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경보를 해제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회 반복방송 -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2. 지역통제상황 야간 민방공경보방송문(안)

광 명 시

야 간 경 계 경 보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렌음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적기의 공습이 예상되므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방송을 들으면서 광명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국 민 행 동 요 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즉시 대피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 다음, 옥내·외의 등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 시고, 손님들에게 경보내용을 알린 다음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고 등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불빛을 줄이고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하시 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은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장비나 대체활용 가능한 장 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야 간 공 습 경 보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 공습경보 사이렌음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확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옥내, 옥외 등을 끈 다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광명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국 민 행 동 요 령

- ○모든 가정과 직장에서는 지금 곧 옥내·외 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 서있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등을 끈 다음 손님들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에서는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자동차는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등을 끈 다음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피하실 때는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고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건물과 차량의 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 피 유도화 차량운행 통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광명시 민방위상황실 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 상황입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속하고 질서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재 차 경 계 경 보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합니다.

- 경계경보 사이레음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광명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광명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공습경보를 경계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계속 등화관제를 하면서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경 보 해 제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했던 실제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경보를 해제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회 반복방송 -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3. 지역통제상황 화생방경보방송문(안)

광 명 시

화 생 방 경 보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실제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화생방경보를 발렁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들으면서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국 민 행 동 요 령

상황 #1 화생방작용제 탐지시, 오염 예상시 또는 공격 확인시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방독면, 보호의 또는 마스크, 물수건, 비닐 우의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호흡기 및 피부를 보호하시고 인근 화생방대 피호나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건물위층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에는 실내에 외부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에서는 바람부는 방향을 판단하여 바람부는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되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영업을 중지하고, 손님들에게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게 한 후 대피시키기 바랍니다.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태세를 갖추고 자체경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보호장비를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 나 건물 내부로 승객을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광명시 민방위상황실 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질서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상황 #2 화생방 공격 종료시

- ○모든 행정기관의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에서는 화생방공 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수습요원은 오염지역에 오염표시판을 설치하고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며 오염지역 제독작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하여 오염증상 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하시기 바랍니다.
-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아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방송은 실제상황입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질서를 지켜 주시고 화생방경보가 해제될 때 까지 계속 보호장비를 착용하시고 방송을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화 생 방 경 보 해 제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했던 실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실제 화생방 경보를 해제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회 반복방송 -

이상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추 1)

4. 지역통제상황 경보해명방송문(안)

광 명 시

경 보 해 명 방 송 문

상황 #1 레이다의 허위향적 포착시(조류떼 포착 등)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된 경계(공급)경보는 관측병의 착오로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상황 #2 적 항공기 귀순시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된 경계(공급)경보는 북한 항공기의 귀순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상황 #3 북한 전투기의 군사분계선 침투시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된 경계(공급)경보는 북한 전투기가 군사분계선에 침투함에 따라 발령되었으나 아공군 전투기가 출격하자 북상도주 하였으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상황 #4 기타 상황시(전기누전 등)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된 경계(공급)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발령된 것이므로 경계(공습)경보를 해제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상황 #5 화생방 오보발령시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된 화생방경보는 ○○으로 인하여 잘못 발령된 것이므로 화생방경보를 해제합니다.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상황 #6 민방공경보용 사이렌 오취명시(통신선로불량 등)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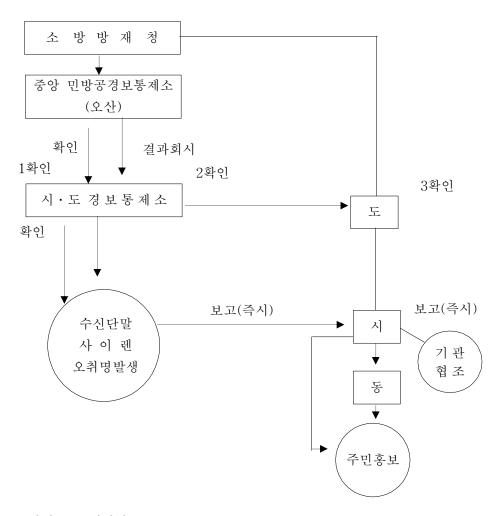
현재시간 광명지역에 발령된 경계(공급)경보 사이렌은 ○○으로 인하여 잘못 취명된 것이오니 광명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 니다.

여기는 광명시 민방위상황실입니다.

[별표 3] 〈개정 2013. 8. 1〉

(민방공경보사이렌 오취발생시 조치사항)

[보고체계]



※ 상황보고 책임자

주간(09:00~18:00): 안전총괄과장(동:동장)

- 야간 및 공휴일(18:00~익일 09:00) : 당직 사령(반장)

(사이렌 오취명 발생시 조치내용)

- 보고내용(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
 - 일 시:
 - 장 소:
 - 경보의 종류: 공습 또는 경계
 - 가 청 지 역:
 - 오취명 워인:
 - 오취명당시 조치사항:
 - 향후조치계획:
- 경보사이렌 오취명 발생시 해명 방송문안(예시)광명시에서 주민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조금 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취명된(공습된 또는 경계) 사이 렌은 (장비 또는 선로) 고장으로 인하여 오취명된 것이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당황함이 없이 평상생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앰프 방송 및 가두방송 2~3회 반복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출 입 자 통 제 기 록 부

구분	출 입 자			안 내 자				
월일	소속	직 급	성 명	서 명	용 무	출입시간	성 명	서 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 12. 15〉

경보사이렌 주간 점검일지

○ 점검일자 : 년 월 일			결	<u>ک</u>	닐무자	민방위	팀장	과	장
O 名	! 검 자 : 직 : 성명 :		재						
구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장비 주변환경 정리 정돈 상태	경보시설함주변 () 경보시설내 ()
-	운영교재, 이력카드, 점검일지, 출입자 명부 비치	운영교 점검일	.,)	이력> 출입지	,)
	경보시설보안과 안전관리 상태								
운	라디오, 손전등 작동상태	라디오	. ()	손전	등 ()
년 영 관 리	제한구역 표지판과 관리책임자 부 착여부								
	단자함 전원과 통신 회선표시 여부								
	비상열쇠(사무실 당직실) 확인	사무실	. ()	당직실	늴 ()
	담당자 비상시대응능력(수동취명 등) 여부								
	도청 민방위 경보통제소 교육이수			()	미이수	()	
	도청 경보통제소와 전화통화 확인								
장 비	자체 현지방송상태								
동	자체 자동점검후 이상여부								
작 상 태	사이렌 배터리 및 충전기	AC전역	압 ()	Г	OC ()
	사이렌 취명시설	업 체	점	검	() 자 체	점 검] ()
	민방위 통신장비	업 체	점	검	()) 자 체	점 검] ()
투 기 사 항									